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2024.6.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일부항목 발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 치수절단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9 치수절단 [1치당]	부분치수절 단술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일부항목 발췌)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V.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9 치수절단 [1치당]	<u>수산화칼슘</u> <u>을 이용한</u> <u>부분치수</u> <u>절단술</u>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u><신설></u>	차9 치수절단 [1치당]	<u>부분치수</u> <u>절단술</u>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u>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u> <u>료는 별도 산정함.</u>	(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